KOSHA GUIDE

C - 56 - 2017

- (3) 해체작업에 사용되는 강구, 브레이커 등의 기계·기구를 양중 할 때에는 낙하·비래의 위험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절단톱 공법에 의한 해체작업 시 톱날 주위에는 접촉방지 커버(Cover)를 설치하고 급·배수설비의 배선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
- (5) 전도공법에 의한 해체작업 시 벽체, 기둥 등 해체부재의 전도위치와 파편의 비산 거리 등을 검토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강관비계, 철골 등으로 가설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압쇄공법에 의한 해체작업 시 파워쇼벨에 적합한 중량의 압쇄기를 부착하고 핀, 볼트 등 연결구조부의 접속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(7) 워터제트공법 및 레이저공법에 의한 해체작업 시 분출되는 분사수, 레이저 광선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다. 석면해체 안전사항

- (1)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할 때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, 작업방법, 근로자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장소를 밀폐시킨 후 습식작업, 음압(陰壓)상태 유지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(3) 석면해체 작업장은 노출기준인 0.1 개/cm 이하로 관리하고 근로자는 방진마스크, 보호의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4)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에 넣어 밀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
- 라. 기타 해체공사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은 KOSHA GUIDE C-47-2017(해체공사 안전보건 작업 기술지침)의 규정에 따른다.